고성군관리계획「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: 당동지구」 결정(변경)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

(의안번호 제1145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1. 13　　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9. 1. 13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09. 1. 22　　산업건설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입안사유

당동지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주택용지를 확보하여 토지이용계획을 합리화,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켜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

3. 청취내용

○ 군관리계획 결정 내용

- 사 업 명 : 군관리계획(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:당동지구) 결정(변경)
- 사 업 위 치 :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302번지 일원
- 사 업 면 적 : 592,936㎡→664,282㎡(증71,346㎡)

4. 청취경위

· 2009. 01. 13 :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주민열람 공고(고성군 공고 제2009-40호)

· 2009. 01. : 지방의회 의견 청취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고성군관리계획 별정(변경)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으로 당초 사업자가 제안하였으나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군수가 제안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군 의회에 의견을 요청하는 것이며,

○ 주요 사업내용은 고성당동 주거형 개발진흥지구와 접하여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제2종제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당초보다 71,346㎡가 증가된 664,282㎡입니다.

○ 본 계획이 주변지역과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도로여건 조성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, 향후 당동지역의 인구증가에 대비한 사전 도시계획수립과 환경친화적 도시로 계획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:

○ 문 : 지난 11월 22일자로 의견청취를 한 것을 이번 회기에 다시 의견청취하는 사유는 무엇인지?

◉ 답 : 전에는 사업자가 제안하는 것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이번에는 군수가 의견을 제안하는 것입니다. 사업자가 제안하는 것은 ⅔이상의 주민동의가 필요하다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으로 군수가 제안하는 것으로 동의가 필요없어 이번 회기에 다시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.

○ 문 : 아파트 신축 건물이 24층으로 화재 발생시 고가사다리차 등 준비와 상·하수도시설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까?

◉ 답 : 소방서 승격이 있었고 작년에 굴절사다리차 등 매입계획이 있으며, 기반시설은 아파트 준공과 불편함이 없도록 마련될 것입니다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○ 2009. 1. 2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